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72호)
-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093호)
-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69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7
1. 대학 기부금 또는 소액 장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김준혁의원안(1), 김준혁의원안(2), 정성국의원안)	7

I. 개요

1.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07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준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1. 10.
- (3) 회 부 일 : 2025. 11.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이 급변하는 사회·경제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등교육 이수율이 OECD 1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 투입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학등록금이 수년간 동결되고 학령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입이 감소하는 등 대학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학의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학생의 입장에서 고물가 시대에 대학등록금이 인상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임.

이에 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기부를 활

성화하고 이를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대출 이자의 지원 등에 쓰이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 2 신설).

2. 김준혁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09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준혁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11. 11.
- (3) 회 부 일 : 2025. 11.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AI 인재양성,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교육발전특구 등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대규모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음. 이로 인해 학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을 위해서는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법은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기부금에 대해 100%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장학금 세액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로 소액 기부금에 대한 혜택이 부족함.

이에 학교발전기금, 장학금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10만원 이하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85조의11 신설).

3. 정성국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506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성국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10.
- (3) 회 부 일 : 2025. 12. 1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4,69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1,444보다 낮은 수준이며, 초등교육(\$19,749) 및 중등교육(\$25,267)보다도 낮아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

17년간의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대학의 재정 악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대학 경쟁력 제고는 물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할 방안으로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는 1천만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30%를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있음.

이처럼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10만 원 전액을 사실상 세금으로 돌려주고 있으나,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대학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금에 대하여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대학 기부금 또는 소액 장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 (김준혁의원안(1), 김준혁의원안(2), 정성국의원안)

현행	김준혁의원안(1)	정성국의원안	김준혁의원안(2)																								
□ <신설>	□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76조의2 신설) ○ 거주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이자의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76조의2 신설) ○ 거주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액 장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안 제85조의11 신설) ○ 거주자가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른 학교 및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기부한 학교발전기금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기부한 학자금·장학금에 대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table><tr><th>기부금 규모</th><th>공제금액</th></tr><tr><td>10만원 이하</td><td>기부금 × 100/110</td></tr><tr><td>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td><td>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td></tr><tr><td>1천만원 초과</td><td>10만원 × 100/110 + 99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td></tr></table>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	1천만원 초과	10만원 × 100/110 + 99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	<table><tr><th>기부금 규모</th><th>공제금액</th></tr><tr><td>10만원 이하</td><td>기부금 × 100/110</td></tr><tr><td>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td><td>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td></tr><tr><td>1천만원 초과</td><td>10만원 × 100/110 + 99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td></tr></table>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	1천만원 초과	10만원 × 100/110 + 99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	<table><tr><th>기부금 규모</th><th>공제금액</th></tr><tr><td>10만원 이하</td><td>기부금 × 100/110</td></tr><tr><td>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td><td>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td></tr><tr><td>1천만원 초과</td><td>10만원 × 100/110 + 99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td></tr></table>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	1천만원 초과	10만원 × 100/110 + 99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																										
1천만원 초과	10만원 × 100/110 + 99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																										
1천만원 초과	10만원 × 100/110 + 99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																										
기부금 규모	공제금액																										
10만원 이하	기부금 × 100/110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10만원 × 100/110 + (기부금 - 10만원) × 15/100																										
1천만원 초과	10만원 × 100/110 + 990만원 × 15/100 + (기부금 - 1천만원) × 30/100																										

현 행	김준혁의원안(1)	정성국의원안	김준혁의원안(2)
	○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u>대학기부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함</u> ○ <u>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대학기부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이월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u>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적용례: 법 시행 이후 기부자부터 적용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김준혁의원안 2025. 11. 10. 제출(의안번호 14072), 김준혁의원안 2025. 11. 11. 제출(의안번호 14093), 정성국의원안 2025. 12. 10. 제출(의안번호 15069)

□ 현재 기부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¹⁾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경우 15%,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음.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 3건의 개정안은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나 학교, 공익법인 등에 대한 장학기부금을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는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또한, 정성국의원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대학기부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10년 이내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이월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 개정안은 대학 기부금 또는 소액 장학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기부금을 활성화하고 대학교나 학교, 공익법인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및 장학사업 등을 육성하고, 대학교 및 학교 등에 대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음.

특히,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학령인구(6~12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대학의 재정적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대학기부금 또는 장학기부금의 활성화는 대학 및 학교 등의 재정적 위기를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학령인구(6~21세) 추계 현황]

(단위: 천명)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7,147	6,978	6,785	6,610	6,432	6,221	5,967	5,735	5,510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국가데이터처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대학기부금등에 대한 공제율만 상향하는 경우 다른 공익목적 기관²⁾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10만원까지의 기부금에 대하여 110분의 100의 공제율이 적용되어 전액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현재 정치자금기부금 및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단 두 개뿐임. 따라서 대학기부금등에 대해 전액 공제되는 한도를 10만원으로 규정할 경우 전술한 두 제도 이외에도 지역 의료법인·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등 공익목적 기관들에 대한 유사한 형태의 기부에 대한 세제지원 요구가 확대될 수 있음.

둘째, 개정안들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액 세액공제는 그 실질이 국비를 통한 대학이나 학교에의 직접 지원과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비 지원이 기부금의 형태로 규모와 사용 용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채 국가의 관리가 실질적으로 곤란³⁾한 사립학교 등에 지원될 경우 재정의

2) 노인·청소년·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학술·문화·예술·종교단체 기부금 등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지역대학 육성이 필요한 경우, 세제지원 방식보다 효율적으로 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 방식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57

3) 유사한 세제지원인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법), 고향사랑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법)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